

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

*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제작자명	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	
	대표자명	생년월일		
	전화번호			
	주소(또는 사업장소재지)			
제작자 등록번호		자기인증 능력 [] 확보 [] 미확보		
제작자 구분	구분 1	[] 자동차 제작자	[] 이륜 자동차 제작자	
	구분 2	[] 국내 제작·조립자	[] 수입자	
등록목적	[] 판매목적	[] 자가사용		
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구분	[] 완성자동차	[] 미완성자동차		
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 및 규모 (※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)	종류	규모		
	[] 승용	[] 경형	[] 소형	[] 중형 [] 대형
	[] 승합	[] 경형	[] 소형	[] 중형 [] 대형
	[] 화물	[] 경형	[] 소형	[] 중형 [] 대형
	[] 특수	[] 경형	[] 소형	[] 중형 [] 대형
[] 이륜	[] 경형	[] 소형	[] 중형 [] 대형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(제2항)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유의사항

○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